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5,837,657	19,675,130
일반회계	625,182,083	18,755,462
특별회계	30,655,574	919,667
기타특별회계	30,655,574	919,66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007,766	30,233
건축진흥특별회계	359,999	10,8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1,133	93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785,226	353,557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314,092	159,42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869	626
수질개선특별회계	65,558	1,96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3,354	21,101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11,531	3,346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5,183,915	155,517
상수도특별회계	6,072,131	182,164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67,87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